

2012년 겨울철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

금년 겨울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불안과 난방비 등 생활비 증가로 생계곤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독거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'따뜻한 겨울나기' 지원하고자 함.

1 관련근거

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시장 지시사항 제11호('11.10.27,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서민지원 월동대책)
-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(기획담당관-14786호, '12.10.12)
-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시행(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-5394호, '12.11.6)
-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('12.11.7, 동절기 취약계층 복지대책 11월중 수립)

2 전망 및 분석

- 지구의 평균온도가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탓에 올 겨울 혹독한 추위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북극 해빙이 많이 녹아내린 탓에 올 겨울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(출처 : '12.10.23.국민일보)
- 이에 따라, 겨울철 생활여건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관리와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(중점관리 대상자 : 약 42천명 - 전체 독거어르신의 20%)

3 추진방향

- 자치구별 안전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관리 철저
- 한파발령 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돌보미와 연락체계 구축
- 독거어르신 결식방지, 동사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 중점관리

4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12.11.19 ~ '13.3.19(4개월간)
- 보호대상 : 42,000명(전체 독거어르신의 20%)

계	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혜자	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	무료급식 수혜자	신규 발굴 독거 등 취약계층
42,000명	18,000명	7,000명	12,000명	5,000명

※ 재가서비스 수혜자 : 재가지원센터, 서울재가관리사, 노인돌봄종합

- 중점 추진사항
 -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
 - 폭설·한파 대비 자치구별 '임시대피소' 지정·운영
 - 집수리,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
 -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
 - 돌봄기관의 민·관 복지서비스 발굴·연계 적극 추진

5 세부추진계획

-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
 - 한파발령 시 돌보미에게 SMS 문자발송으로 안전관리
 - 중앙재난본부,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



재난문자 입력
(한파담당부서)



크로샷 시스템



돌봄미예계
정보 제공

- 동절기 독거어르신 보호 관련 노인돌봄미 교육 실시
(수행기관,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및 응급처치요령,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)
-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배포 : 별첨 1

○ **어르신돌봄미, 재가서비스 등 인력활용 보호활동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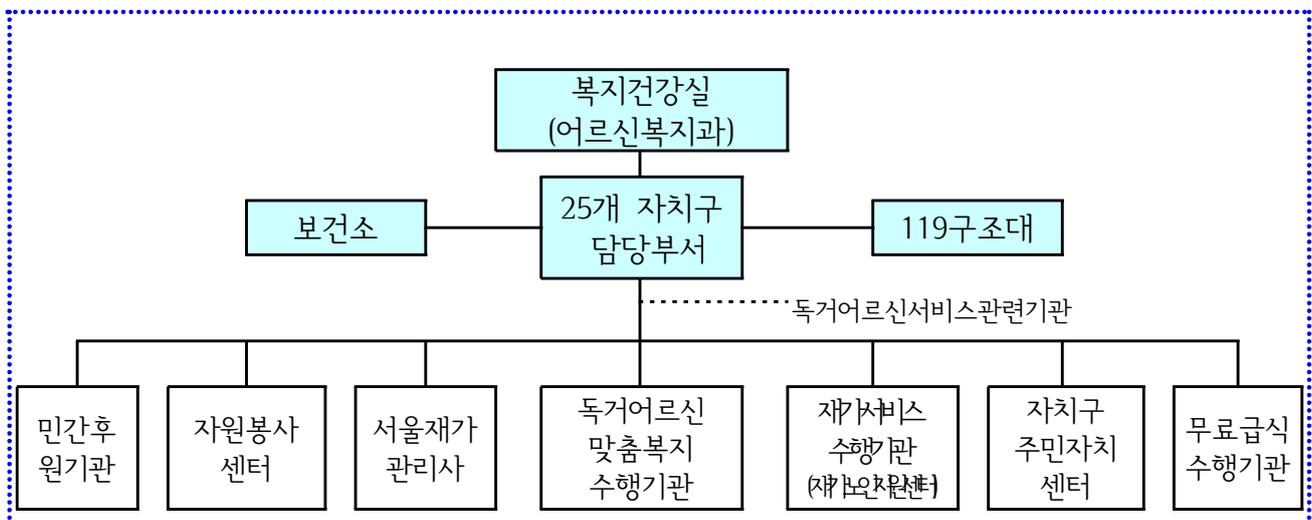
- 돌봄기본서비스 18,000명에 대한 주 1회 이상 방문, 주 3회 이상 전화, 안심폰을 통한 동절기 안전 확인
- 기타 재가서비스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확인
(7,000명 : 돌봄종합서비스, 재가노인지원센터, 재가관리사)

※ 심혈관계 질환 및 거동불편 등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집중관리

○ **자치구별 SMS 문자발송 연락체계 재점검 및 보완조치**

- 돌봄업무 관리자, 돌봄미 교체 등 점검 후 보완 : '12.11월말

한파대비 어르신복지 관련 비상연락체계도



□ 폭설·한파 대비 자치구별 '임시대피소' 지정·운영

- 운영기간 : '12.11 ~ '13.3(4개월)
- 지정시설 : 50개소(자치구별 2개소)
 - 임시대피소 지정현황 보고 서식 : 별첨 6
- 지정대상 : 실제 대피소 역할이 가능한 구립경로당
 - 난방시설 이상이 없고 50명이상 수용이 가능한 장소
- 지정 후 자치구 조치사항
 - 임시대피소의 난방실태 및 수용 가능인원 등 점검
 - 한파 시 임시대피소 24시간 운영원칙 사전 협의
 - 주민자치센터, 반회보, 돌봄수행기관 활용 안내철저
- 지정기관 한파기간 난방비 등 지원 : 별도방침

□ 상수도 동파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점검

- 점검방법 : 수도사업소, 전문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
- 점검기간 : '12.11.20 ~ '12.11.27(1주일)
- 점검대상 : 돌봄수행기관 관리하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

□ 집수리,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

- 점검기간 : '12.11.20 ~ '12.11.27(1주일)
- 점검대상 : 돌봄수행기관 활용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
 -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, 재가노인지원센터, 재가관리사
- 점검사항 : 한파예방 소규모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대상
- 한파 취약계층 어르신 보완대책

- 소규모 보수 : 외부 창문 비닐 보호막 설치, 보일러 부품교체 등
 - 보수인건비는 해당분야 전문 자원봉사자 민간 재능기부 활용
 - 보일러 점검 및 교체보수는 “희망온돌 「따뜻한 방 만들기」”
사업으로 지원(구별 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 완료 : 약 4,400명)
- 난방용품 지원 : 침낭, 담요, 발열내의
- 지원대상 : 10,570명(전체 독거어르신 5%)
- 수행기관 :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, 재가노인지원센터

□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

- 지원기간 : '12.12 ~ '13.2(3개월)
- 지원대상 : 한파 시 거동불편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
 - 영구임대아파트 내 거동불편 어르신 수요파악 철저(9개자치구)
(강남, 강북, 강서, 금천, 노원, 동작, 마포, 서초, 중랑)
- 지원내용 : 동절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 추가지원
 - 식사배달 : 1일 2식(1식 식사배달, 1식 대체식)
 - 밑반찬배달 : 주 2회 → 주 4회
 -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: 교통카드 또는 실비 교통비
(차량이용 봉사자 : 1인 월 20,000원, 3개월)
 - 수행기관 : 노인종합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재가노인지원센터
- 수혜인원 : 3,121명(식사지원 2,077명, 교통카드 1,044명)
 - 식사배달 : 896명(구별 배정인원의 20%)
 - 밑반찬 배달 : 1,181명(구별 배정인원의 20%)
 - 봉사자 교통카드 : 1,044명(동절기 추가인원의 50%)

□ 돌봄기관의 민·관 복지서비스 발굴·연계 적극 추진

- 독거어르신 집수리 등에 재능기부자 확보하여 지원
 - “희망온돌 「따뜻한 방 만들기」” 에서 지원하는 보일러보수의
기타 발생하는 집수리사업은 기능보유 전문봉사자 활용 지원
→ 건축, 설비, 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봉사자 사전 확보
- 폭설·한파 시 응급의료사고 발생 시 관내 병·의원 연계
 -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락체계 사전 구축
- 기타 난방용품 등 후원기관 개발하여 지원 확대
 - 동절기 민간기업 후원물품 사전협의하여 폭설 대비 난방용품,
비상식품(라면, 햇반 등) 자치구별 필요량 사전 확보

6 소요예산 : 총 818,639천원

구 분	소요예산	예산과목	산출근거
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	422,800	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, 독거·재가노인종합 서비스 확대,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, 사회복지보조(307-10)	10,570명×40,000원
무료급식 추가지원	395,839	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, 노인사회활동지원, 저소득노인급식제공, 자치단체경상 보조금(308-01)	(식사배달) 896명×2,800원×90일 = 225,691,000원 (밀반찬배달) 1,181명×3,500원×26회 = 107,507,000원 (봉사자 실비 교통비) 1,044명×20,000원×3월 = 62,640,000원

7 행정사항

- 폭설·한파 시 자치구별 임시대피소 지정보고 : '12.11.26
-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대상자에게 배포: '12.11.30
- 한파 대비 난방용품 지원 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유의
 -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제2항(기부행위 예외)
 - 제2호(의례적인 행위), 제3호(구호적·자선적 행위), 제4호(직무상 행위)
- 한파 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완료 : '12.12.10

- 붙임 1.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1부.
2. 집수리 및 난방용품 참고자료 1부.
3.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1부.
4.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대상 결과보고 서식 1부.
5. 무료급식 추가 및 봉사자 교통카드 예산배정 내역 1부.
6. 폭설·한파 시 임시대피소 지정현황 보고 서식 1부.
7. 2012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(보건복지부) 1부. 끝.

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!

- 한파 피해 주의사항 -

1. 외출할 때는 내복, 목도리, 모자,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,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.
2.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,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손가락, 발가락, 귓바퀴,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.
※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.
4.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.
5.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.
6. 폭설·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, 구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(1661-2129)로 연락주세요.

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

☎ 119 [119안전신고센터] , ☎ 120 [서울시다산콜센터]
☎ 129 [보건복지콜센터], ☎ 1661-2129 [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]

<별첨 2>

한파 대비 보수 및 난방용품

□ 소규모 보수 :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설치, 보일러 부품교체 등



- ▶ 제품명 : 바람막이 비닐보호막
- ▶ 사용용도 : 창문, 현관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
- ▶ 단가 : 30,000원(설치 인건비 미포함 → 수행기관 기능보유 자원봉사자 활용)

□ 난방용품 지원 : 1인용 침낭, 담요, 발열내의



- ▶ 제품명 : 침낭(1인용)
- ▶ 단가 : 40,000원 ~ 50,000원
- ▶ 제품명 : 이불담요(1인용)
- ▶ 단가 : 30,000원 ~ 40,000원
- ▶ 발열내의 상하세트 (1인용)
- ▶ 단가 : 30,000원 ~ 40,000원

<별첨 3>

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

어르신, 올 겨울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!



서 울 특 별 시